

환경보전법중 주요개정 사항

주요골자

-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특정야생동식물 | 7. 제작 또는 수입자동차 배출농도의 시험검사 의무화 |
| 2. 환경영향평가 | 8.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 제조·수입 또는 사용의 규제 |
| 3. 방지시설의 설치 | 9. 합성화학물질의 관리 |
| 4. 방지시설의 설계·시공 | 10. 배출시설 관리인 자격기준 |
| 5. 자가측정대행제도 개선 | 11.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·점검에 관한규정(훈령) |
| 6. 비산분진규제 | |

1. 특정야생동식물

가. 특정야생동식물

가. 근거조항 : 법 제 9조 2, 령 제 6조 2~6, 규칙 제 11조~16조.

나. 변동사항

○타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야생동·식물 보호규정 신설(법 제 9조의 2)

• 환경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특정야생동·식물은 허가없이 포획·채취 등을 하지 못함.

다. 적용대상 : 파충류·양서류·곤충류·식물류

2. 환경영향평가

가. 근거조항 : (법 제 5조, 영 제 4조, 규칙 제 7조~ 8조)

나. 변동사항

1) 민간사업도 일정규모 이상은 평가대상에 포함.

2) 영향평가대상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조정

3) 영향평가 협의절차 조정

다. 적용대상 : 영 제 4조 2에서 정한 별표 1

3. 방지시설의 설치

가. 근거조항 : 법 제 15조의 ①, 규칙 제 22조, 제 23조

나. 변동사항

○방지시설설치외의 방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인정

○소량폐수의 외부 위탁처리를 인정함에 따라 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수탁처리 제도를 도입하고, 환경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자로 처리케 함.

다. 적용대상

○특정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 또는 환경청장이 정하는 폐수를 환경청장이 지정·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 또는 자가처리하게 하는 경우

○공장용 건물의 건물의 완전밀폐된 지하 이하에 설치된 소음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

4. 방지시설의 설계·시공

가. 근거조항 : 법 제15조2 ②, 규칙 제21조

나. 변동사항 :

○일부 또는 경미한 사항의 방지시설의 변경은 방지시설업자의 자도 설계·시공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적용대상

○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·기구류 등의 신설·대체 또는 개선

○허가 당시 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의 20% 이내의 증설, 대체 또는 개선

5. 자가측정대행제도 개선

가. 근거조항 : 법제 22 조의 2 · 규칙 제37조

나. 변동사항

○자가측정대행자의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 업소간 과잉경쟁을 미연에 방지, 측정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업소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측정대행자의 측정대행범위를 정함.

○측정대행자의 측정능력을 고려하여 업무범위(대상시설, 업무활동 구역 또는 항목)를 정함으로써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고 배출 업소의 측정이행율을 제고토록 함.

○시설규모별 자가측정대상·항목 및 방법의 차등화 및 자가측정면제대상 설정

- 규모별 차등화 : 별표8 (규모의 기준을 종전의 평균폐수배출량에서 시설용량으로 전환)

- 자가측정 면제대상(별표8)

- 위탁처리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가입사업장
- 유류는 유황함유 분석표의 비치로써 같음

6. 비산분진 규제

가. 근거조항(법 제26조2)

나. 신설내용

○환경청장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비산분진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분진

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함

○비산분진 발생억제 시설의 기준에 부적합시→개선명령→사업중지(또는 시설의 사용중지나 제한)

다. 적용대상시설

○비산분진발생원 시설

라. 지역별로 차등관리(고시 제87-4호 별표1)

갑 지역	을 지역	병 지역
○특별대책지역	○갑지역을 제외한	○갑지역, 을지역을
○서울특별시 및 직할시	한 도청소재지	제외한 전지역
○성남시, 안양시, 광명시, 부천시, 구리시	○인구 10만 이 상의 도시	

7. 제작 또는 수입자동차 배출농도의 시험 검사의 무화

가. 근거조항 : 법 제30조, 영 제22조, 규칙 제45조

나. 변동사항

○자동차 제작 또는 수입자동차에 대하여 배출농도 시험의 실시·절차 등을 정함.

○자동차배출가스 장치의 성능이 부적합할 때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.

○자동차 제작에 있어서의 배출가스 농도기준을 정함.

다. 적용대상

○자동차 배출가스 농도기준 : 규칙 제45조(별표12)

○자동차 배출 가스 검사방법 및 절차 : 환경청 고시 제87-7호('87. 6. 18)

8.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 제조·수입 또는 사용의규제

가. 근거조항 : 법 제31조, 영 제23조, 규칙 제46조

나. 변동사항

- 자동차연료용 첨가제의 제조·수입 사용할 때에는 신고토록 함.
- 신고된 첨가제에 대한 심사결과 환경보전상 또는 국민보건상 위해 한 때에는 사용을 규제함.

다. 적용대상

- 신고대상 자동차 연료용첨가제 : 규칙 제46조 제1항(별표13)

9. 합성화학물질의 관리

가. 근거조항 : 법 제42조의3, 영 제28조의2, 규칙 제 52조

나. 신설내용

- 합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도록 함.
- 신고대상 합성화학물질의 범위·심사 기준을 정함.
- 신고된 합성화학물질에 대한 심사결과 환경보전상 또는 국민보건상 위해한 때에는 제조·수입을 규제함.

다. 적용대상

- 신고대상 합성화학물질 : 영 제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물질

10. 배출시설 관리인 자격기준

가. 근거조항 : 법제23조, 규칙 제43조 별표12
나. 변동사항

- 3종 사업장은 환경기사 2급이상의 분야별 자격소지자 각 1인이나 해당분야 기술자격(환경기사 2급이상) 소지자인 1인
- 4종 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
- 월간 작업시간이 일일평균 17시간 이상인 1종 및 2종사업장은 종별관리인 각 2인 이상을 두어야 함(1인은 종별 3의 관리인으로 대체가능)
-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·폐수의 위탁처리 또는 공동처리 사업장은 종별 5의 관리인을 들 수 있음.

다. 적용대상 : 규칙 별표12에 해당하는 사업장

11.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·점검에 관한 규정(훈령)

가. 지도·점검사항

- 배출시설설치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·관리사항과 산업폐기물관리사항

나. 지도·점검대상 사업장

구분	환경지칭	시·도
사업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 별표5에서 정하는 공업단지의 공단내 전사업장 ○ 부산 사상공업지역중 전용공업지역 ○ 서대구공업단지 ○ 대구 제3공단 ○ 공단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- 3종이상 사업장 (대기, 수질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지칭 관할사업장 외의 사업장

다. 지도·점검의 종류 및 내용

종류 구분	정기지도·점검	수시지도·점검
지도· 점검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년 2회이상 실시 ○ 관리상태에 따라 차등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원발생 ○ 타 기관의 요청 ○ 비정상 가동우려 ○ 기타 필요한 경우
지도· 점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 ○ 자가측정 실시사항 ○ 배출시설관리인 선임사항 ○ 산업폐기물관리상태 ○ 행정명령 이행사항 ○ 기타 필요사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 ○ 기타 필요사항